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93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최수진・김예지・강선영

서지영 · 임이자 · 성일종

구자근 • 안철수 • 신성범

유용원 · 김민전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안보에 관한 주요 기술로 정부에서 심사·보호·관리 중이며, 외국으로 기술반출 시 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보호조치 요구됨.

그런데 외국정부나 단체·세력 등의 사주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 사익에 따른 동기보다도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 가 있음에도, 국가핵심기술 유출 동기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없음.

주요 기술 강국은 기술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. 미국은 '경제스파이법'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유출 시 간첩죄로 가중처벌 하고 있고, 일본도 최근 '경제안전보장추진법'을 마련하였으며, 대만은 국가안전법 에 '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'를 명문으로 규정함.

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

등에 유출한 행위에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외국 정부 또는 단체의 사주에 의하여 행한 경 우에는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임(안 제98조). 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에 있는 기술을 기망· 절취·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적국·외국·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유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④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의 사주를 받아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98條(間諜) ① ・ ② (생 략)	第98條(間諜) ① ・ ②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
	와 긴요한 관계에 있는 기술을
	<u>기망·절취·협박 등 부정한</u>
	방법으로 취득하여 적국・외국
	•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유
	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정
	역에 처한다.
<u><신 설></u>	④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의
	사주를 받아 제3항의 죄를 범
	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
	분의 1까지 가중한다.